

계룡시조례 제 호

계룡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주민의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 보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지급대상 및 방법) 활동장려금은 계룡시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3조 (지급의 한도) 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50만원이하로 지급한다.

제4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